

**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1월 17일,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1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2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은수 복지환경국장)

가. 상정 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
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2)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사항 정비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" 생략 "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5. 토 론 요 지 (없 음)

6. 수정안의 요지 (없 음)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